제 1160 호
1985.8.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편집인 : 공 보 관 이 광 우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113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 ····· 3

제 2114 호 :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접수재행정처분규칙개정규칙 ····· 27

◎ 고 시

제 55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 34

제 55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34

제 556 호 : 민영 (연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35

제 557 호 : 돼지고기연중가격고시 ····· 35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485 호 : 공공하수도사용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 35

◎ 구청공고

관악구제 39 호 : 동회계관계공무원직인사용승인공고 ····· 36

관악구제 41 호 : 동관인신조 (개각) 사용승인공고 ····· 37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8 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

◎서울특별시규칙제 2113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04조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69 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 및 운전면허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과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허시험 실시계획)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허시험 시설, 응시예상 인원 등을 감안하여 년간 면허시험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응시자가 하루에 시험을 끝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조(출장면허시험) ①시장은 면허시험장과의 거리, 응시인원, 그 밖의 지역 특수여건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출장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출장면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장의 시설은 9,900 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위에 다음의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제 39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된 포장된 코오스의 시설과 자동전자채점 시설
2. 성능이 우수한 시험용차량
3. 100 명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학과시험장 시설
4. 그밖에 국가자격 시험장으로 적용한 주위환경 및 부대시설

③시장이 출장면허시험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출장면허시험 장소에서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관은 시험시작 2시간전에 각종 시험시설 및 시험용 차량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출장면허시험장 시설주에게 수시로 시설의 보강 및 시험용차량

등의 개선을 명하여 국가자격시험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한다.

제2장 면허시험 응시절차등

제4조(응시원서 접수절차등) ①면허시험 응시원서는 경찰국 면허과(이하 "면허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출장면허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출장면허시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주거지 관할 시, 도에서의 응시여부
3.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한 이상여부
5. 주민등록증 또는 그밖의 증빙서류 등으로 본인여부 확인하여 대리시험의 응시여부
6. 수입증지 첨부여부
7. 그밖에 구비서류 비치등의 확인

③면허시험 응시지역 지정

1.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은 한강이남의 구 거주자
2.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은 한강이북의 구 거주자
3. 한남운전면허 시험장은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지체장애자 및 국제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한다.

④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시험장소 및 시험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 ①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시험은 면허과(한남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다.

②면허과장은 응시원서를 접수 받았을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 실시부에 접수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시험은 적성시험과 법령시험으로 구분하며 법령시험감독 책임자는 면허시험장장군으로 지정한다.

④채점은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른다.

⑤답안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시험 답안지로 하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답안지를 각각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⑥시장은 합격자 명단에 의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합격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소지한 면허와 다른 면허의 응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종류 및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응시하는 때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군면허소지자의 응시) ①군면

허 소지자가 법 제7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응시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에 군면허증과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첨부한 사람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제출서류 이외에 "군운전병자력기록표"를 첨부한 사람에 한하여 접수하되 그 군운전자력기록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부여한다.

1. 제1종 대형면허

법 제70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허용되는 차종의 군차량을 6월이상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제1종 보통면허

4톤 이상의 군트럭을 6월이상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특수면허

면허를 받고자 하는 그 특수자동차를 6월이상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면허 소지자의 응시원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대장(제1차 확인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운전경력조회서를 통보하여 신속히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군운전경력조회서를 발송한 후 3개월이 경과되어도 회신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조회를 하여야 하며, 재조회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도 회신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불가처리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운전경력조회로서 운전경력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제8조(면허시험 위원회의 구성) ①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시험 위원회는 의원장(이하 "면허시험위원장"이라한다)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시험위원장은 경찰국 면허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면허시험장장이 되며, 위원은 면허업무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간부중에서 시험위원장이 지명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면허시험 위원회의 개최) ①면허시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면허시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0조(면허시험 위원회의 임무) ①면허시험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면허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②면허시험위원은 면허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그밖의 면허시험에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면 허 시 험

제11조(필기시험 문제의 출제범위 및 배점)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중에서 50문제를 출제한다. 다만,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시험을 면제하는 때에는 법령중에서 25문제를 출제한다.

②제1항의 출제방식은 객관식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문제는 선택형으로 하되, 그 배점은 1문제당 2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4점으로 한다.
2. 1문제당 설문은 4문 택일로 하고 그 부호는 갑, 을, 병, 정으로 한다.

제12조(필기시험 및 문제지의 관리) ①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문제지를 배부 받은 시장은 면허시험위원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토록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장은 시험개시 직전에 면허시험위원 1인을 지명하여 그날에 실시할 필기시험 문제지를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별토록 하여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시험 감독관은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문제지를 열별로 상이하게 배부하여야 하고 응시요령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시험감독관은 응시원서의 사진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를 확인하고 그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시험감독관은 필기시험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시험감독을 하여야하며 필요없이 응시자에게 근접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험감독관은 시험종료 즉시 응시자에게 배부한 필기시험 문제지를 빠짐없이 회수하여 면허시험위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면허시험위원장은 필기시험 문제지의 출납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불출대장에 기록케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⑧필기시험 문제지를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필기시험의 소요시간) 필기시험의 소요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분으로 한다.

제14조(필기시험의 답안용지) ①필기시험 답안용지는 별지제5호 서식으로하되, 면허시험위원장이 사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장은 필기시험 답안지의 불출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불출대장에 기록케 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필기시험 감독관의 선임과 임무) ①면허시험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필기시험 감독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1. 면허시험 시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예상되는 경찰공무원
2. 필기시험 감독관으로서 과거 면허시험 감독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찰공무원

②필기시험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같다.

1. 답안지 작성요령과 주의사항에 의한 교양
2. 면허시험장내의 질서유지와 출입자통제
3. 대리시험등 부정시험행위의 적발 및 답안지의 확인 날인
4. 답안지에 면허시험위원장의 날인 여부와 일련번호의 확인
5. 필기시험 종료후 문제지와 답안지의 회수와 매수확인
6. 답안지를 회수한후 두사람 이상의 응시자 입회하에 봉합하여 즉석에서 채점할수 있도록 필요한조치 강구

③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는 동시에 면허시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필기시험 채점관의 선임과 임무) ①면허시험위원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기시험 채점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된 필기시험감독관중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②필기시험 채점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은 시험종료즉시 현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 채점은 자동채점기로서 채점하되 자동채점기가 고장등으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인력으로 채점한다.

3. 인력으로 채점할 경우는 적색 오일 연필을 사용하되 채점착오로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 부분에 채점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①면허시험위원장은 채점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답지를 사전에 작성·비치 하였다가 채점직전에 채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1. 응시번호나 성명을 기재치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을때

2. 답안지에 면허시험위원장 및 시험감독관의 날인과 일련번호가 없을때

3. 1문에 2개 이상의 해답을 표시한 것은 그 문제에 한하여 틀린 것으로 한다.

③채점관이 채점할 때에는 응시자 중에서 두사람 이상의 입회관을 입회시키고 채점하여야 한다.

④면허시험위원장은 채점이 끝나는 즉시 현장에서 합격 및 불합격을 발표하고 종합성적표에 기록한다.

⑤채점관은 채점 완료즉시 정답지외 답안지를 시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시험) ①기능시험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코오스 기능시험"이라 한다)은 굴절코오스, 곡선코오스, 방향전환코오스 순서로 하여야하며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장거리시험"이라 한다)은 시험장의 설치구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1종대형 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굴절코오스 및 곡선코오스의 전진과 방향전환코오스의 전후진으로 한다.

③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라"형 코오스중 굴절코오스 및 곡선코오스의 전진으로 한다.

④특수면허시험은 별지 제6호의 서식으로 정한 코오스와 차량으로 실시한다.

⑤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기로 하고 코오스기능 시험의 각 코오스는 그 변의 외측으로 선폭 10센티미터의 황색 경고선과 경고선의 외변 내측에는 전자채점기에 의한 자동채점이 가능토록 검지선을 설치하며, 장거리 기능시험은 시험장 주행

거리에 따라 채점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전자채점기에 입력시켜 실시한다.

⑥기능시험 진행중 수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오채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오채점 발생사례

가. 수험생의 행위가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오채점이 발생하는 경우

나. 기계조작 및 운영 불합리로 인하여 오채점이 발생하는 경우

다. 기계고장으로 잘못 채점이 되는 경우

2. 조치요령

기능시험관은 오채점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기능시험감독관(기능담당자부)에게 보고하고 다음 요령에 의거 재시험을 실시한다.

가. 오채점 사실에 대하여는 차순위 응시자 두사람을 확인시키고 채점표에 오채점 내용을 명기한 후에 기능시험 감독관과 그 시험관이 동시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오채점자에 대한 재시험은 기능시험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능시험 감독관은 시험종료후 면허시험위원장에게 오채점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험감독관은 채점기의 운용요령을 숙지하여 시험관 자신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오채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기능시험용 차량) ①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은 규칙 41조에서 규정한 구조, 성능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험용차량을 매일 점비하여 성능이 우수하도록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기능시험관의 임무) ①기능시험관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공정한 채점으로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절차 및 주의사항 교양
2. 시험용차량 및 전자채점기의 사전점검
3. 대리응시등 부정행위 적발
4. 시험장 내외의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방지

②기능시험관은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면허시험위원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관은 시험보조원이 필요없이 시험장에 출입하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시험의 판정) ①기능시험 채점표는 기능시험 시행전에 응시자에게 배부하고 시험 직전에 응시표와 같이 기능시험관이 확인·관리한다.

②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차순위 응시자 두사람 이상을 근접 참관시켜 시험판정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의 판정은 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사항을 호칭 발표하고 기능시험 채점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무인을 합격자는 청색, 불합격자는 적색으로 날인한다.

제22조(제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제2종면허 응시) 법 제70조 제5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제1종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그 불합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2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의족, 의수등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시력 및 청력장애자 그밖의 제1호에서 규정된 사람의 신체장애자는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5장 운전면허증등의 기재사항 및 발급관리

제23조(면허증의 규격등) 운전면허증은 규칙 제45조 제2항에 의한 서식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의 사진은 천연색으로 복사하고 글자는 전산활자로 한다.
2. 면허증의 기재사항 용지는 물속에서도 변화 오손되지 않는 합성수지 가공지로 한다.
3. 면허증의 뒷면에는 위조방지용 자성체 핸들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24조(면허증의 기재요령) 운전면허증에는 다음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본적은 시·도만 기재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한다.

2. 면허번호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되 일련번호는 면허종별에 구분없이 10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2개이상의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부일자

교부일자는 최종면허시험 합격일

로부터 기산하여 2일후로 한다. (예시 : 1월1일 합격자는 1월 3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로 면허증을 서환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때에는 접수당일을 교부일자로 한다.

4. 유효기간

가. 신규로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과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의 적성검사에 한함)의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은 3년3개월, 제2종은 5년3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그 다음의 정기적성검사부터는 그 면허증의 유효기간 연도만 5년 또는 3년으로 가산하고 월일은 같은 날로 한다.

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받은 면허와 다른 면허를 통합하는 때의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종면허 소지자가 제1종면허시험시에 응시 합격하여 통합하는 때에는 제1종면허시험시에 적성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시험에 합격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3개월이 되는날로 한다.

(2) 제1종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제2종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을 때에는 제2종면허 시험시에 적정시험을 실시하였음으로 그 시험에 합격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3개월이 되는날로 한다.

(3) 제1종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받거나 면허종별이 같은 면허(예시 : 1종보통에서, 1종대형, 원동기에서 2종보통등)를 받은 면허와는 관계없이 종전의 면허증을 유효기간 일에 3개월을 가산한 날로 한다.

5. 기재사항 변경

면허증의 앞면에 기재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한하여 변경사항을 뒷면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다만, 주소변경시에는 읍, 면 동장이 기재하고 날인할 수 있다.

제25조(면허증의 발급관리) ①면허증의 면허 번호는 이중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한사람에게 1개이상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미 받은 면허와 새로 받은 면허가 통합될때나, 면허증을 분실, 도난 또는 헐어 못쓰게 되어 면허증을 다시 교부하는 때에는 종전의 면허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종면허소지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제2종면허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1종면허가 취소됨으로 제2종 면허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③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면허결격사유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관리)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는 면허과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배부한다.

②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면허행정 처분중에 있는 사람이 허위분실신고때 하는 등의 부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월말에 일괄하여 소각 폐기한다

제27조 (운전면허대장의 작성관리) ①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등의 기본적인 사항
2. 적성검사 실시사항
3. 면허행정처분 사항
4. 점수제 행정처분 사항
5. 그 밖의 면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기록 사항에 대하여는 면허담당 간부가 기재시마다 관계구증서류등으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경찰국장은 보관중인 면허대장의 기재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적 성 검 사

제28조 (정기적성검사) ①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당일에 면허증을 서환 교부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 신청자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때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확인한 후에 전출지 시·도에 전산조회하여 지체없이 면허증을 발급조치하고 사후에 면허대장을 신청한다.

③적성검사 기간의 만료일기산은 운전자가 면허과에 접수한 날로 한다.

제 29 조 (적성검사 연기신청등) ①영 제 52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은 가족 및 친지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성검사 기간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케 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하는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사람이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등으로 수회에 걸쳐 단기간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 체류기간이 3 개월미만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국일로부터 3 개월을 기산하여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제 30 조 (의료기관의 지정등) ①영 제 4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은 시장 (경찰국장) 이 지정한다.

②시장은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 제 45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대리신체검사 방지대책을 위한 지시
2. 신체검사 실시방법의 통일에 관한 지시
3. 신체장애자를 비롯한 응시자등의 판정기준에 관한 지시
4. 그 밖에 적성시험의 합리적운영에 관한 지시

③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시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7 장 전 출 입 업 무

제 31 조 (다른 시·도간의 전출입) ①주거지 관할이 다른 시·도의 운전면허 소지자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여부를 주민등록증과 대조 확인한다.
2. 전입신고자의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여 적성검사 실시기간이 촉박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 1 호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국을 경유 전입자의 면허대장을 신청한다.

②전입 경유시 경찰국에서는 즉시 전입자에 대한 기록을 전산 조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출지 경찰국에 면허대장을 청구한다.

③전출지 경찰국에서는 접수 즉시 전출지 경찰서에 보관중인 대장에 전출사항을 기록후 보고토록 전통

하달한다.

④전출지 경찰서에서 모든 기록사항의 누락여부를 재확인한 후 대장을 경찰국 경유 전입지 경찰국에 통보한다.

⑤면허대장을 받은 전입지 경찰국에서는 전입대장에 전입사항을 기록하고 사본대장은 경찰서에 하달한다.

제32조(서울시내의 전출입) 서울시내의 주소이동은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확인한 후 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전출자에 대한 면허대장관리) 전출자의 실태파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국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전출자 대장과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입자 대장을 각각 작성 비치한다.

제8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34조(면허정지처분) ①면허정지처분은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에 의한다.

②면허정지처분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 집행하고 그 집행사항을 주1회 시장(경찰국장)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결정한 때는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현장에서 정지기간을 기록하여 통지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면허취소처분) ①경찰서장은 운전자가 규칙 제53조(별표15호)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경찰국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결정하는 때에는 충분한 구증서류를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취소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서로서 하여야 한다.

④경찰국장이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처분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36조(면허취소처분의 집행과 통지) ①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등으로 본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통지를 하는 때에는 적당한 빈칸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면허취소에 대한 범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다.

제38조(면허취소처분의 철회)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취소처분을 철회한다.

1.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때
2. 분실 또는 강취당한 운전면허증으로 다른 사람이 행사타가 취소된 때
3. 경찰공무원의 사무취급착오로 인하여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4. 범칙금 수납기관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제39조(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철회절차)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철회결정은 면허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의 취소철회를 의결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철회 결정서로 하되, 충분한 구증서류 및 관계관의 진술을 듣는 등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사무착오에 대하여는 적절한 귀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범칙금 수납기관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철회하는 때에는 사무착오 사실을 구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시장이 취소처분의 철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날을 철회일로 집행하고 제2항의 운전면허취소철회 결정서에 구증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예시) 영 제51조에 정하여진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여행사실은 출국 또는 입국 등을 내용으로 기재된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해외여권 원본으로 증명된 사람
2. 재해사실은 화재 또는 수해의 발생후 사회관례상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된 상태를 내용으로 한 동장, 구청장 발행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3.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실은 기동불능의 증상으로서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거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사실조복 확인된 사람.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었던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었거나 석방된 것을 내용으로 한 사실증명이 있는 사람이거나 현역군인 또는 군속 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군속으로서 복무한 사실을 내용으로한 소속 부대장 발행의 복무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5.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실은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용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소속 기관장 발행의 확인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기복으로 부득이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한 동장, 구청장 발행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제41조(각종 보고) ①경찰국장은 제2조에 의한 면허시험 실시계획을 당해연도 1월31일한 치안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국장은 다음 통계를 다음 달 10일한 치안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 현황
2. 시험실시 현황
3. 군면허 발급현황
4. 국제면허 발급현황
5. 장애자 운동능력 측정현황
6. 장애자 시험실시 현황

제42조(시험실시사항 감독) ①시장은 월1회 경찰국과장급으로 하여금 면허시험장을 순시케하여 시험 실시사항을 감독한다.

②필기, 기능시험장에는 수시로 감찰요원을 입회시켜 면허부정행위를 예방한다.

③시장은 경찰국 과장급으로 하여금 면허과에서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차 면허시험 실시사항을 수시로 감독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실시부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령시험성적	판 정	비 고	결재		
						계 장	시험장장	과 장

40-18 제1160호 서 1985.8.21

(별지 제2호 서식) (제 5조 제 5항)

성 명

수험번호

주의사항

1.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 정답란에 각각 표시(●)한다.
2. 수정은 일체하지 못한다.
3. 두개 이상 해답을 표시하면 무효가 된다.
4. ○표란에는 필기시험문제지 번호를 기재한다.

위원 장인

(별지 제2호 서식)

수험번호				
만	천	백	십	일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01 02 03 04 05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답안지 ○ No. 호

답을병정				답을병정				답을병정				답을병정				답을병정			
1	①	②	③	6	①	②	③	11	①	②	③	16	①	②	③	21	①	②	③
2	①	②	③	7	①	②	③	12	①	②	③	17	①	②	③	22	①	②	③
3	①	②	③	8	①	②	③	13	①	②	③	18	①	②	③	23	①	②	③
4	①	②	③	9	①	②	③	14	①	②	③	19	①	②	③	24	①	②	③
5	①	②	③	10	①	②	③	15	①	②	③	20	①	②	③	25	①	②	③

100-000 CBX R

(별지 제3호서식)

서 울 특 별 시

면허 02638- 19 . . .

수 신 : ○○부대장

참 조 :

제 목 : 군운전경력조회서

아래 사람의 군운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확인하여 송부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군 소 속			계 급		
			군 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조 회 사 항					
군 운 전 면 허	군면허번호		발급 기관		
	군면허구분		발급년월일		
군 차 량 운전경력	운전 차종		운전기간		
	주행 기록		주 특 기		
기 타 사 항					

경 찰 국 장 ㊞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7호)

필기시험문제지및답안지출납대장

월 일	면허종별 및 구분	문제지		답안지		인수자		인계자		비고
		문제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성 명	인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1항)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 답안지 ◯ 제 호

수험번호

성 명

면허종별

※ 주의사항

1.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으로 정답란에 각각 ■ 표시 한다.
2. 수정은 일체하지 못한다.
3. 두개이상 해답을 표시하면 무효가 된다
4. ◯표란에는 필기시험 문제지 번호를 기재한다.

시험감독관	면허시험위원장

수험번호	갑을병정		갑을병정		갑을병정		갑을병정		갑을병정	
0 0 0 0	1	□□□□	11	□□□□	21	□□□□	31	□□□□	41	□□□□
1 1 1 1	2	□□□□	12	□□□□	22	□□□□	32	□□□□	42	□□□□
2 2 2 2	3	□□□□	13	□□□□	23	□□□□	33	□□□□	43	□□□□
3 3 3 3	4	□□□□	14	□□□□	24	□□□□	34	□□□□	44	□□□□
4 4 4 4	5	□□□□	15	□□□□	25	□□□□	35	□□□□	45	□□□□
5 5 5 5	6	□□□□	16	□□□□	26	□□□□	36	□□□□	46	□□□□
6 6 6 6	7	□□□□	17	□□□□	27	□□□□	37	□□□□	47	□□□□
7 7 7 7	8	□□□□	18	□□□□	28	□□□□	38	□□□□	48	□□□□
8 8 8 8	9	□□□□	19	□□□□	29	□□□□	39	□□□□	49	□□□□
9 9 9 9	10	□□□□	20	□□□□	30	□□□□	40	□□□□	50	□□□□

40-20 제1160호 '시 보 1985. 8. 21

(별지 제 6 호서식)　　(제 18 조제 4 항)

특 수 면 허 시 험 의 코 오 스

구 분	시 험 용 차 량	시 험 코 오 스	실 시 요 령
추레라	ㅇ 트랙터 제한없음 ㅇ 트레일러 • 전장길이 : 12 m 이상 • 너 비 : 2.4 m 〃 • 축간거리 : 8.9 m	A코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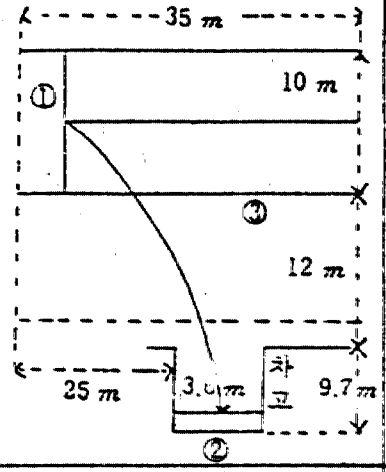	1. 시험기간 : 5분이내 2. 코오스 확보된 시험용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A코오스 또는 B코오스로함. 3. 실시요령 가. 출발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차고에까지 갔다가 나. 역으로 출발점으로 되돌아감. 다. 1지점과 2지점간에는 3선의 이탈을 허용함.
	ㅇ 트랙터 제한없음 ㅇ 트레일러 • 전장길이 : 9 m 이상 • 너 비 : 2.4 m 〃 • 축간거리 : 6.5 m 〃	B코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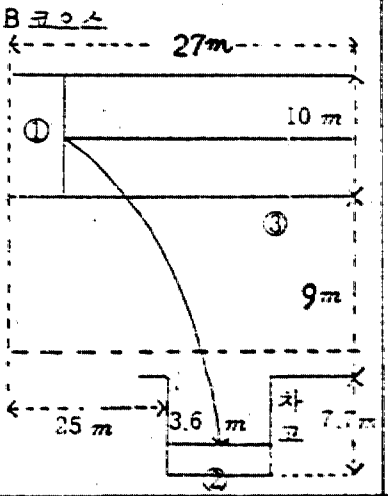	
레이카	• 전장길이 : 8.2 m 이상 • 너 비 : 2.4 m 〃 • 축간거리 : 4.6 m 〃	제 1 종 대형면허 코오스의 방향전환코오스와 동일함.	1. 시험기간 : 3분이내 2. 시험방법 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준하여 방향전환코오스를 실시함.

(별지 제 7 호서식)

면 허 시 험 판 정 고 무 인

(제21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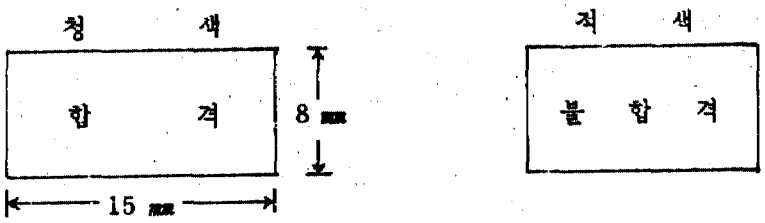

(별지 제 8 호서식)

(제26조 제3항)

임 시 운 전 증 명 서 발 급 대 장

일련번호	면허번호	성 명	유효기간		발급사유	결재		
			1 차	2 차		계 장	시험장장	과 장

(별지 제 9 호서식) (제 33 조)

전 출 자 대 장

일련번호	전출일자	면허번호	성 명	전출지주소	비 고	결재	
						담 당	계 장

(별지 제 10 호서식) (제 33 조)

전 입 자 대 장

일련번호	전입일자	전출도명	면허번호	성 명	전입지주소	비 고	결재	
							담 당	계 장

(별지 제 11 호서식) (제 34 조 제 2 항)

운 전 면 허 정 지 처 분 결 정 서

1. 성 명 :

2.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3. 면허번호 :

4. 차량번호 : 시 도 ( )

5. 사유(위반내용) :

6.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7. 처분내용 : 운전면허 효력 정지

8. 처분기간 : 198 년 월 일 월 일(일간)

위와같이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처분을 결정함.

* 처분결정 내용을 단속 현장에서 본인에게 통지하였음.

계 장	과 장	서 장

(별지 제 12 호서식)　　(제 35 조 제 3 항)

운 전 면 허 취 소 처 분 결 정 서

운전자인적사항	주 소			소속또는 직 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연 락 처	
위반및처분내용	적용법조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40-26 제 1160호 시 보 1985.8.21

(별지 제 13 호서식) (제 39 조 제 2 항)

운 전 면 허 취 소 철 회 결 정 서

운전자 인적사항	주 소		소속 또는 직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취소년월일	

취소 및 철회사유	취소사유	철회사유	비 고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 처분을 철회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면허시험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8 월 2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

◎서울특별시규칙제 2114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 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도로교통법 제 78 조, 동법시행령 제 53 조, 동시행규칙 제 53 조 및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것 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9 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과 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전하는자 및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국내 운전면허소지자와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행정처분 구분) 이 규칙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란 면허의 효력 일시정지를 말한다.

제 4 조(배점기준 및 내용) 법규위반의 경우 면허행정처분의 기준과 내용은 별표1 과 같다.

제 5 조(타법령 위반자의 행정처분) 산림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산림당국의 교발이 있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은 산림청훈령 제 290 호 ('84.9.27) 에 의한다.

제 6 조(보관물반환등) 정지처분 마감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보관물 반환은 정지처분 마지막날의 근무시간 끝나기 1 시간전에 한다. 다만, 정지처분 마지막날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인 때는 그 전날의 근무일을 기준한다.

제 7 조(위반내용 경합시의 조치) 동시에 2 개이상의 법규위반행위가 경합되어 단속한때는 그중에서 정지처분이 가장 중한 1 개의 위반행위만을 적용하여 정지처분한다.

제 8 조(기록유지등) ①정지처분 내용을 별지 1 호 서식의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처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물을 반환할때는 반환일시 및 수령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보관물은 일정한 보관함에 집행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한다.

제 9 조(특혜부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70 조 규정에 의한 무사고

운전자 및 유공운전자는 별표2에 의한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제10조(보칙)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때의 사무처리는 본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표1)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

(1) 통고처분 7개항목

일련번호	위반내용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배점	내용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정지선 위반포함)	제5조	15	ㅇ신호기의 신호 또는 교통경찰공무원(보조자포함)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때 ㅇ교차로의 직전이나 정지선이 있을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을때
2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제12조 ① ② ③ ⑤	20	ㅇ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통행하지 않을때 ㅇ도로의 중앙우측을 통행하지 않을때(직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ㅇ차가 안전지대에 들어갔때
3	차선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제13조	10	ㅇ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지 않을때 ㅇ도로중앙 우측에 2이상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을때 그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에 위반하였을때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배점	내 용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할때
4	제한속도위반 (20㎞/H 초과부터)	제15조 ③	15	○제한속도 및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때
5	앞지르기 금지위반	제20조	15	○앞차와 다른차가 나란히 진행할때 앞지르는 행위 ○앞차가 다른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때 앞지르는 행위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장소 ○법령규정과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는행위
6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제24조 제48조 제3호	10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때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배점	내 용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7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난폭운전)	제 44 조	10	○고의로 (인식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난폭운전 행위 ·급진입 (급차선변경) ·지그자그 운전시 ·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을때

(2) 즉심회부 (형사입건 포함) 3개항목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점	내 용
1	술에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때 (형사입건)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형사입건)	제 41 조 ①	90	○혈액 1㎖에 대하여 0.5 mg 또는 호흡 1ℓ에 대하여 0.25 mg 이상 음주하고 운전하였을때
		제 41 조 ②	90	○술에취한 상태를 측정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형사입건)	제 50 조 ①		○즉시 (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점	내 용
				나 자진신고 하였을때
			60	·소정시간외
			30	·소정시간내
3	교통사고발생시 신고불이행 (형사입건)	제50조 ②	15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는 하였으나 경찰관(경찰서포함)에게 신고하지 않았을때 ○물적피해 교통사고발생후 도주(미신고)는 신고불이행에 의거 처리 (신고시한) 소재지 : 3시간내 (경찰서, 고속도로) 소재지외 : 12시간내
	지연신고		7	○교통사고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신고시한을 경과하여 지연 신고하였을때

별표 2

무사고운전자및유공운전자특혜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무사고 운전자와 유공운전자에 대하여는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있어 벌점과 상계한다.

1. 무사고운전자는 표시장별로 45 점을 부여한다.
2. 유공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훈 장	100점
나. 포 장	90점
다. 대통령표창	80점
라. 국무총리표창	60점
마. 장관표창	45점
바. 치안본부장표창	35점
사. 시·도지사표창	25점
아. 경찰국장표창	15점
자. 경찰서장표창	10점

② 제1항 경우 벌점과 상계하고 남은 점수가 있을때에는 표시장 또는 표창장을 받은 해의 다음해까지 상계한다.

(별지 1호)
규 1

교통법규위반운전자처리대장

(발급대장)

40-32 제1160호 A1 표

스티카No. (관련번호 순으로기재)	위반자					위반법조	보관품	처분내용			집행내용						
	단속일시	차종	차량번호	면허번호	성명			통고처분 즉심회부 (납부기한) 출두일	처리 이첩(경찰서)	처리 훈방(일시)	통고처분 납부한 일자	통고처분 벌칙금	즉심회부(통고처분불이행시 즉심회부포함) 회부일자	구류	과료	벌금	환형

운전면허행정처분			불이행자에대한조치								단속경찰관	감독자확인	
처분기간	보관품 반환		벌칙금미납즉심불출두				면허행정처분대상					담당	계장
	일자	수령인	1차최고	2차최고	취소상신	취소일자	1차최고	2차최고	취소상신	취소일자			

1985. 8. 21

교통법규위반운전자처리대장

2

(수리대장)

일련번호	수리		스티카	위반자					위반법조	보관품	처분내용	집행내용						
												통고처분		즉심회부(통고처분불이행시 즉심회부포함)				
접수(순)	접수일자	단속경찰서문서번호	티카 No	단속일시	차량	차량번호	면허번호	성명			통고처분 즉심회부 (납부기한) 출두일	납부한 일자	범칙금	회부일자	구류	과료	벌금	환형

운전면허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감독자확인	
처분기간	보관증반환		범칙금미납즉심불출두				면허행정처분대상				담당	계장
	일자	수령인	1차최고	2차최고	취소상신	취소일자	1차최고	2차최고	취소상신	취소일자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5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지적승인

1. 동대문구 중화동 324-98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및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8.2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 로	3	6	450	중화동 324-98	중화동 326-113	일부구간=190m
변경	소 로	3	6	190	〃	〃	위치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 55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8.21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강서구화곡동 225-7 신안건설산업(주)
   대 표 : 서울특별시 강서구화곡동 370-103 우 경 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신월동 591-1, 2
   나. 면적 : 23,775.4
   다. 규모

변경전	아파트 10 층 5 동 420 세대
변경후	아파트 10 층 5 동 440 세대

4. 사업시행기간
   '85.3 ~ '86.3.31

◎서울특별시고시제 556 호

민영(연립)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5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494 번지 1 호외 1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8.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민영(연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대농주택개발 여규홍외1인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면목동 494-1 외 1 필지
   나. 대지면적 : 6,487.60 ㎡
   다. 규모 : 연립주택 3 층 5 동 63 세대 상가 3 층 1 동
4. 사업기간 : '85.8 ~ '86.7.

◎서울특별시고시제 557 호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 고시 제 85-18 호, '85.4.18)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8.21

서 울 특 별 시 장

1. 돼지고기 연동가격
   돼지고기(정육 500 g 당) 1,750 원
2. 시 행 일
   1985.8.23 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85 호

공공하수도사용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제 3 조)에 의거 서대문구청 토목 30350 -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신설)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5.8.2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용개시 년월일 : 별첨참조
나. 배수구역 : 하수관망도 참조 (서대문구청 토목과비치 : 도면생략)
다.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서대문구청 토목과 비치
라.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 합류식
마. 공람기간 : '85.8.20 ~ '85.9.3

인가번호	공 사 명	위 치	사용개시년월일
2	북아현동 113-712 간 하수도공사	북아현동 117,149,171 번지 일대	'85. 8. 4
4	북가좌동 286 주변외 4 개소 하수도 공사	북가좌동 68,80,239, 286,291 번지일대	'85. 9. 4
8	홍제동 44-57 간 하수도 공사	홍제동 44 번 i , 연희동 446 번지	'85. 9. 4
13	충정로 2 가 37-29 외 1 개소 상·하수도 공사	충정로동 78,33 번지 일대	'85. 8. 4
18	북아현 3 동 1 의 1517 주변외 3 개소 도로정비공사	북아현 3 동 1 번지 일대	'85. 8. 4
20	홍은동 9 번지내 정비공사	홍은동 9 번지	'85. 8. 4
23	북가좌동 3 번지일대 도로정비공사	북가좌동 3 번지일대	'85. 8. 4
26	합동 1 번지외 1 개소 하수도공사	합동 1 번지 , 충정로동 143 번지	'85. 8. 4

구 청 공 고

◎관악구공고제 39 호

동회계관계공무원직인사용승인공고

우리구 봉천제 7 동이 '85. 9. 1.자 분동에 따라 봉천제 11 동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 대상동 : 봉천 제 11 동
2. 사용개시 : '85.9.1 09:00
3. 직인의 인영 : 별첨

1985.8.2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영					
공인명	봉천제 11 동 (분임물품 관리관)	봉천제 11 동 (분임물품 출납원)	봉천제 11 동 (도급경비 출납원)	봉천제 11 동 (분임수입금 출납원)	봉천제 11 동 (전도자금 출납원)

◎관악구공고제 41 호

동관인신조(개각)사용승인공고

우리구 봉천제 3 동외 8 개동 일반사무용, 민원사무용 직인 및 계인을 신조(개각) 사용승인하고 구관인및 계인을 동일자로 폐기하였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5. 8.2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대상동
   봉천제 11 동, 봉천 3 동, 봉천 4 동, 신림본동, 신림 2 동, 신림 3 동, 신림 6 동, 신림 8 동, 신림 10 동
2. 사용개시 : 1985.9 .1 09:00
3. 폐인일시 : 1985.8.31 13:00
4. 관인의 인영 : 별첨

인영		
공인명	봉천제 3 동장인 (민원사무용)	봉천제 3 동계인 (민원사무용)
인영		
공인명	봉 천 제 4 동 장 인 (일 반 사 무 용)	

인영			인영		
공인명	봉천제 11 동장인 (일반사무용)	봉천제 11 동계인 (일반사무용)	공인명	봉천제 11 동장인 (민원사무용)	봉천제 11 동계인 (민원사무용)
인영			인영		
공인명	신림본동장인 (민원사무용)	신림본동계인 (민원사무용)	공인명	신림제 2 동장인 (민원사무용)	신림제 2 동계인 (민원사무용)
인영			인영		
공인명	신림제 3 동장인 (민원사무용)	신림제 3 동계인 (민원사무용)	공인명	신림제 6 동장인 (일반사무용)	신림제 6 동계인 (일반사무용)

인영	
공인명	신 림 제 8 동 장 인 (일반사무용)
인영	
공인명	신림제 10 동장인 (민원사무용) / 신림제 10 동계인 (민원사무용)

사　　령

◎ 1985 년 8 월 20 일자　　령제 306 호

김 재 철

별정직 5 급상당에 임함.
민방위국 비상계획과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비상계획계장에 보함

서 울 특 별 시 장

서 울 특 별 시
행 정 사 무 관　　이 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대 통 령

지상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 1985 년 8 월 22 일자　　령제 30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병 학	내무국 (해외연수)	중구건설국장	지방토목기정
이 인 근	내무국 (해외연수	건설 재시험소 토질시험계장	지방토목기좌

40-40 계 1160 호 서 보 1985.8.21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주 봉 현	내무국(해외연수)	강동구 수도공사과장	지방보육기사

서 울 특 별 시 장